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 또는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안 건 요 지 : 별 첨

4. 검 토 의 견 : 별 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2009년 12월 18일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전문위원 임 묵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본 조례 안은 2009년 11월 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가.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익상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계속 감면하고
- 나.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시한을 연장 시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실비노인복지 시설의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
- 나.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중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등 실효성이 미미한 감면을 폐지함(안 제8조).
- 다. 일몰이 도래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일부 폐지함(안 제14조).
- 라. 고령화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고 기초노령연금 및 경로우대 등 노인 복지지원 연령과 동일하게 주택에 대한 감면 중 1가구 1주택 예외 대상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함(안 제15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 안은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적용시한을 1년 연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총 6장 36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 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안 제1장 총칙에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규정의 목적을, 제2장에서는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을, 제3장에서는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을, 제4장에서는 서민 주택 건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을, 제5장에서는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을, 제6장에서는 사무처리의 위임, 감면대상 제외 등을 위한 보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으로 적용례, 적용시한, 경과조치 등을 명시하고 있음.

○ 본 개정 조례 안 검토결과

감면폐지 2건, 감면범위 일부조정 2건, 감면축소 3건, 사치성 부동산의 감면배제 신설 등 주요 개정내용이 감면대상을 축소하는 사항이고 공익상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계속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표준안 허가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함.